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11.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9.11.18.

다. 상정일자 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12.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조만호】

가. 제안이유

도시 간 교류협력과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」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한 대외협력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적용대상을 ‘국외 도시’에서 ‘국내외 도시’로 확대
- 대외교류와 관련한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‘정의’ 조항 신설(안 제2조)
-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)
- 기타 표현 정비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안은 도시 간 교류협력과 자매결연 등에 관한 규정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」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한 대외협력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으로는
조례 적용대상을 ‘국외 도시’에서 ‘국내외 도시’로 확대하고, (안 제2조)대외교류와 관련한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‘정의’ 조항 신설, (안 제9조)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임.

- 검토의견으로는
본 개정안은 구와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